

조달수수료 고시

[시행 2022. 8. 31.] [조달청고시 제2022-17호, 2022. 8. 31., 일부개정]

조달청(조달회계팀), 070-4056-7048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

사업	적용기준	금액구분	요율(%)					비고	
			총액 (일반용역포함)	단가(일반, 3자, MAS)	유류				
					저장 용	구매 카드			
내자 구매	계약금액 (납품금액)		210,000원(정액)	0.54(정률)	0.27	0.135	(총액) · 1억 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단가) · 10억 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2천만원까지	530,000원(정액)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07(정률)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0.76						
		1억원초과 -10억원까지	0.48	0.47					
		10억원초과 -100억원까지	0.38	0.37					
		100억원 초과							
		장기분할 대지급 신청시 추가 수수료	2.82(0.94%×3년)			(장기분할 대지급 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의 5억 원 이하의 총액			
기술 평가 대행	기술평가 대행 (사업예산액)	구매 수수료액	30			(제안서기술평가대행 대상) · 수요기관 자체발주S/W 사업			
	계약 및 기술평가 일괄대행 (계약금액)	구매 수수료액	10			(조달계약의 제안서평가대행 대상) · 내자 및 외자 총액			
외자 구매	계약금액	1백만원까지	1.2			· 초과분 체감적용			
		1백만원초과-5백만원 까지	0.9						
		5백만원초과-1천만원 까지	0.7						
		1천만원초과	0.4						
리스 계약	취득물건금액 (계약·납품 금액)	구매 수수료액	40						
기술 (건설)용역	계약금액		설계 등 용역			감리·CM 용역		1. 초과분 체감적용 2. 종합심사낙찰제 수수료는 제안 요율 적용	
			제안	PQ	비PQ	제안	PQ		비PQ
		1억원까지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3	1.0	0.8	1.2	0.9		0.8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1.1	0.8	0.6	1.0	0.7		0.6
		30억원초과	0.9	0.6	0.4	0.8	0.5		0.4
		0.7	0.4	0.2	0.6	0.3	0.2		
		설계공모							
		심사포함		심사제외					

사업	적용기준	금액구분	요율(%)								비고
		1억원까지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30억원초과	1.9 1.6 1.3 1.0				0.8 0.6 0.4 0.2				
공사 계약	계약금액		국가,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1. 초과분 채감적용 2. A Type: 종합심사낙찰제(국가), 종합평가낙찰제(지자체),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경토가격 작성) 3. B Type: PQ, 대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4. C Type: 비PQ 5. D Type: 일괄입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기술형입찰의 수의계약(경토가격 미작성)
			A Type	B Type	C Type	D Type	A Type	B Type	C Type	D Type	
		10억원까지	0.4	0.35	0.3	0.2	0.3	0.25	0.2	0.1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0.3	0.25	0.2	0.1	0.15	0.12	0.1	0.05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15	0.12	0.1	0.05	0.07	0.06	0.05	0.02	
100억원초과 500억원까지	0.07	0.06	0.05	0.02	0.04	0.03	0.02	0.01			
500억원 초과	0.06	0.05	0.045	0.015	0.035	0.025	0.015	0.01			
맞춤형 서비스	기획·설계 관리 (사업예산액)		일반공사				일괄·기술제안				1. 초과분 채감적용 2. 사업예산액은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공사비, 공사와 직접관련된 기타비용을 말하며 부지 매입비 및 예비비 등은 제외 3. 사업관리 중 업무범위 조정(사업중단 포함)이 있는 경우 수수료는 '단위업무별 구성비'를 적용하여 제공된 서비스 업무량을 기준으로 부과 * 맞춤형 서비스 일괄대행은 기획설계관리, 시공관리 요율을 합산 적용 * 요율상의 용어 정의 · 일괄: 설계시공 일괄입찰 · 기본: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100억원까지	0.462				0.396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420				0.360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336				0.288				
	1,000억원 초과	0.302				0.259					
	심의대행 (사업예산액)		일괄·기술제안		관급자재 검토대행		설계공모		* 맞춤형 서비스 일괄대행은 기획설계관리, 시공관리 요율을 합산 적용 * 요율상의 용어 정의 · 일괄: 설계시공 일괄입찰 · 기본: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일괄·기본		실시·대안						
		100억원까지	0.056	0.037	0.004	0.084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049	0.032	0.003	0.073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041	0.028	0.003	0.062						
1,000억원 초과	0.037	0.025	0.002	0.056							
시공관리 (사업예산액)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실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 대안: 대안입찰	
	100억원까지	0.846				0.677					
	100억원초과~500억원까지	0.736				0.598					
	5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0.626				0.501					
1,000억원 초과	0.562				0.450						
기타	실시설계 단가 적정성		국가,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술형 입찰의 수의계약

사업	적용기준	금액구분	요율(%)						비고		
시설 조각 부	(경토요청금액)	100억원 까지	0.04			0.04			시 경토가격 요청수수료 는 실시설계단가적정성 요율적용		
	공사원가경토 (경토요청금액)	100억원 초과	0.04			0.02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0.05						· 변경대상 금액은 증액부 과 감액부의 절대값 합계금 액		
	물가변동 (경토요청금액)		0.1								
	민자사업 (경토요청금액)		0.05								
	설계적정성 검토 (경토요청금액)			설계적정성 검토(일반)			설계적정성 검토(VE명행)			· 초과분 채감적용	
				계획	기본 (중간)	실시	계획	기본 (중간)	실시		
				100억원 까지	0.029	0.058	0.058	0.029	0.102		0.102
				100억원초과~500억원 까지	0.026	0.053	0.053	0.026	0.081		0.081
	500억원초과~1,000억원 까지	0.021	0.042	0.042	0.021	0.065	0.065				
1,000억원 초과	0.019	0.038	0.038	0.019	0.058	0.058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0.20						· 변경대상 금액은 증액부 과 감액부의 절대값 합계금 액			
물자 조정	불용품 매각금액		3.0						· 단일 요율 적용		
나라 장터	전자입찰	물품구매, 일반용역		시설공사, 기술용역				· 나라장터 수수료는 조 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 과 지침' 참조			
		2천만원 미만	10,000원	5천만원 미만	10,000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0,000원						
		5천만원 이상	30,000원	2억원 이상	30,000원						
납품 검사 대행	조달청 직접검사	계약 건당	330,000원								
	전문기관 위탁검사료	계약 건당	20,000원								

* 공사계약 및 기타시설업무의 위탁사업은 위탁한 기관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2.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 사항 등

1) 조달수수료 면제

근거법령	내 용	세 부 내 용
「조달사업법」 제16조제3항제2호	계약체결 지연	표준행정소요일수를 초과하여 계약체결 하는 경우(장기계속계약일 경우에는 1차 계약, 단가계약 제외)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기술개발·향상 조달사업 확대 등	① 전통공예품(문화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② 수요기관 직불시 조달수수료가 1,000원 미만인 경우 (납품요구 1건, 유류 공동구매 수수료는 고지서 발행기준) ③ 조달청에서 계약한 공사로서 총사업비 물가변동 검토요청을 하는 경우 ④ 민간투자사업 중 조달청과 사전에 수수료 면제하기로 합의한 후 검토 요청을 하는 경우

2) 조달수수료 감경

근거법령	내 용	세 부 내 용
「조달사업법」 제16조제3항제1호	미리 대금을 지급 받는 경우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조달수수료 감경 *선납비율 (할인율) : 30%이상 50%미만(8%), 50%이상 70%미만(14%), 70%이상 80%이하 (20%)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기술개발·향상 조달사업 확대 등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등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수수료를 협의하는 경우

※ 전체 감경률(수수료에서 감경하려는 액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은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 심 의 대 행			
<일괄·기술제안>		<설계공모·관급자재 검토대행>	
단위 업무	비중	단위 업무	비중
약정체결	10.3%	약정체결	23.0%
공사 발주업무	21.9%	설계공모·관급자재 검토대행 심의	77.0%
기본설계 또는 기술제안 심의	51.1%	소계	100.0%
실시설계 심의	16.7%		
소계	100.0%		

◇ 기 획 · 설 계 관 리			
〈일반공사〉		〈일괄 · 기술제안〉	
단위 업무	비중	단위 업무	비중
약정체결	3.5%	약정체결	4.2%
설계 등 용역 발주	3.1%	기본계획 수립	8.5%
계획설계 관리업무	7.4%	입찰방법 심의	3.2%
중간설계 관리업무	25.9%	입찰안내서 작성 · 심의	14.8%
실시설계 관리업무	41.1%	공사 발주업무	9.6%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18.9%	CM 용역관리	7.7%
소계	100.0%	기본설계 관리업무	23.0%
		실시설계 관리업무	29.0%
		소계	100.0%

◇ 시 공 관 리 : 공정률을 산출하여 적용

4.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 ①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